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4
----------	-----

제출년월일 : 2000. 11.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제4차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00년도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면 사전에 보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2항)
- 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0조 제2항)
- 다. 보조사업의 경비 배분 변경, 사업의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득하던 것을 사업자가 발생 즉시 신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항)
- 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할 경우 처분의 종류를 구체화 함. (안 제15조)
- 마. 보조사업자의 신고사항으로써 1~2호의 내용은 제9조, 제12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3, 4호는 관리차원에서 행정기관의 편의적인 사항으로 규제를 없애고자 함. (안 제16조)
- 바.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를 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설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7조)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위배여부”를 “적합여부”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을 “사전에 보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부가한 지령서”를 “부여한 교부결정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보조지령전에”를 “교부결정 통지전에”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을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 취소할 수 있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부 조건이 보조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2조제1항중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내용이 교부 목적에 위배 될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계승받는”을 “승계받는”으로 한다.

제15조중 “감독상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감독상 시정명령 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 한다

제17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조사업의 정지로 인해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조건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회 계 과 ☎ 940-4311
입 안 자	회 계 과 장	박 세 영
	경 리 담 당	이 기 영
	담 당 자	황 태 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u>위배</u> 여부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u>적합</u> 여부
2.~4. (생략)	2.~4. (생략)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생략)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u>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u>사전에</u> <u>보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u>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u>부가한 지령서</u> 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u>보조지령전</u> 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 ----- ----- <u>부여한 교부결정서</u> ----- ----- ② <u>교부결정 통지</u> 전에 ----- ----- ----- -----

현행	개정안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생략)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한한다. 1.~3. (생략) (신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	-----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 1.~3. (생략) 4. 교부 조건이 보조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 -----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내용이 교부 목적에 위배 될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있다. ②----- 승계받는 -----. 제15조(감독) ----- ----- ----- ----- ----- -----

현행	개정안
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 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감독상 시정명령 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삭 제)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제) 1. (생략)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생략)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았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제)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보조사업의 정지로 인해 보조금 교부 목적 및 조건을 달성할 수 없을 때